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8다279149(본소), 2018다279156(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건물명도 등 청구]

재판경과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8다279149(본소), 2018다279156(반소)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8. 29 선고 2017나2065334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태선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파산자 주식회사 B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AT

판결 선고 2020. 9. 24.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8. 29. 선고 2017나2065334(본소), 2017나2065341(반소)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본소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반소 청구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N

이유

1. 본소 청구 부분

가. H 공사금액 중 243,500,000원 관련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파산전 회사가 H를 통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도장공사, 내장공사, 준공청소는 하도급업체의 요구에 따라 파산전 회사가 직접 발주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되었거나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시행하지 못한 부분을 직접 시행하였다고 보아, 위 공사대금 합계 243,500,000원은 원고의 파산전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H 공사금액 중 296,480,000원의 이중 공제 주장에 관하여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파산전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미지급 공사대금 등 3,63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은 '원고의 파산전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등 채권에서 H의 창호유리공사대금 296,48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파산전 회사의 공제 주장 등을 일부 받아들여, 원고의 본소 청구 중 1,671,974,1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용하였다.

나) 파산전 회사에 대하여 2017. 12. 5. 파산선고 결정이 있었고, 원고의 소송수계신청에 따라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파산전 회사를 수계하였다. 원고는 2018. 7. 10. 청구취지를 '원고의 파산전 회사에 대한 파산채권이 1,908,890,634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였다.

다) 원심은 제1심판결을 고쳐쓰거나 추가 판단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면서, 원고의 파산전 회사에 대한 채권 1,671,974,183원에서 H의 창호유리공사대금 296,480,000원을 포함한 합계 594,888,308원을 추가로 공제해야 하므로, 원고의 파산전 회사에 대한 파산채권은 1,077,085,8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라고 판단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파산전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등 채권을 계산하면서 제1심에서 이미 공제된 H의 창호유리공사대금 296,48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594,888,308원을 공제함으로써 위 창호유리공사대금을 이중으로 공제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유모순 또는 이유불비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2. 반소 청구 부분

원고는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원심에서 인용된 반소 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파기 범위

원고는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본소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 중 296,4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만 파기사유가 있다. 그런데 원심은 원고의 파산전 회사에 대한 파산채권을 총액으로 산정하여 확정하였으므로, 위 파기 취지를 반영하여 다시 파산채권 총액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본소 청구에 관한 부분을 전부 파기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본소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반소 청구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노정희

주심대법관박상욱

대법관안철상

대법관김상환